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52728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11. 28.

판결 선고2018. 1. 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657,148원 및 그 중 22,397,666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6. 12. 3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망 C과 피고 A 사이에 2016.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A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6. 6. 2. 접수 제18059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8. 21. 피고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4.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8. 24. 신한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계약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C은 2016. 7. 19. 사망하였고, 2016. 7. 24.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 8. 24. 3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2016. 11. 7. 신한은행에 22,851,436원(원금 22,612,502원 + 이자 238,93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그 중 453,770원을 회수하여, 2016. 11. 7.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22,397,666원(22,851,436원 - 453,770원)이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금149원 $\{453,770\text{원} \times 12\% \times 1(2016. 11. 7. \sim 2016. 11. 7.) \div 365, \text{원 미만 버림}\}$ 이다.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59,333원이다.

다. C의 부동산 처분

- 1) C은 2016. 6. 2.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86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C의 배우자인 E이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 2016. 6. 1. 매매대금 41,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고 A이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인 2016. 6. 1.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E의 딸인 F의 계좌로 2016. 5. 8. 2,000,000원, 2016. 5. 29. 500,000원, 2016. 5. 15. 3,000,000원, 2016. 6. 2. 5,000,000원, 2016. 6. 30. 1,000,000원, 2016. 8. 1. 200,000원, 2016. 9. 4. 600,000원의 합계 12,3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6. 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재산상태

- 1) 이 사건 매매 당시 적극재산 : 합계 79,869,000원
 - 이 사건 부동산 : 41,000,000원(갑 제9호증)
 - 사천시 G 답 285평 : 34,854,000원(이 법원의 시가감정)
 - SM520차량 : 1,830,000원(갑 제20호증)
 - 무쏘픽업차량 : 2,515,000원(갑 제21호증)
- 2)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 : 합계 72,971,557원
 -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2,657,148원
 -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가압류 채무 4,090,459원(갑 제18호증)
 - H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3,000,000원 (갑 제18호증,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평택시에 대한 지방세 채무 323,950원
 -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2,900,000원

마. C의 사망과 상속관계

- 1) C은 2016.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E과 아들인 피고 B가 있었으나, E이

2016. 8. 30.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B가 단독으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B는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느678호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657,148원(잔존대위변제금 22,397,666원 +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149원 + 법적절차비용 259,333원) 및 그 중 22,397,666원에 대하여는 2016. 1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2. 30.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6. 6. 1. 기준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6. 7. 19. C이 사망하였으며, 결국 2016. 8. 24. 3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할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소극재산이 오히려 적극재산보다 많았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에게 재산가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매매로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매매대금을 C 자신이 아닌 배우자 E의 딸 F의 계좌로 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C을 본 적이 없고 C의 채무관계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C의 배우자인 E이 대리인이라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1,000,000원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900,000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여 10,000,000원은 그 임대차보증금조로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8,100,000원은 돈이 되는대로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E이 수리비 명목으로 더 지급해달라고 하여 합계 1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A은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시 C을 대리한 E과 알던 사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일인 2016. 6. 1.까지 매매대금 중 5,500,000원 만이 지급되었음에도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도 E의 딸인 F 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E이 피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거주하기로 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 A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보다 더 지급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을가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 만으로는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계선

별지